의안번호	2218256
의 뢰 인	김현 의원
회 답 일	2026. 10. 6.
추계번호	26B21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제2항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2항 단서 부분(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함)을 삭제함	-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제2항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 치료비 지급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9년 4월 16일 이후에도 4·16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국가의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추가재정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029년 4월 16일 이후 지원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검사·치료 내용 및 지원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nabo.go.kr

[참고자료 1] 세월호 관련 법률상 지원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희생자 지원 현황

지급주체	지원근거 법령 조항	지원내용
4.16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보건복지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0조	생활지원금(생계급여)

❑ 피해자 지원 현황

지급주체	지원근거 법령 조항	지원내용
4.16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보건복지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생활지원금(긴급복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0조	생활지원금(생계급여)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	의료지원금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5조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비

* (기타 지원내용)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6조 및 제27조(치유휴직 지원), 동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동법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동법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요청) 등

❑ 잠수사 지원 현황

지급주체	지원근거 법령 조항	지원내용
4.16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제2항	손실보상금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보상금
	수상구조법 제29조제7항	의료지원금(치료비 등)

[참고자료 2] 의료지원금 지원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총괄) '14년부터 '25년까지 4,778명(중복포함), 71,954건 지원, 11,035백만원 수혜(1인당 약 2.3백만원)

○ 연평균 약 400명, 약 6,000건, 약 92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신체피해지원 규모가 정신피해 지원에 비해 약 12배

※ 의료비 청구지급절차: ①수진자가 건보공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진료비 환급), ②의료기관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진료비 미청구)

※ 현재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병원진료 전액 지원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연도	인원(명)			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신체	정신	계	신체	정신	계	신체	정신
2014	865	865		6,089		6,089	760		760
2015	570	570		6,510		6,510	827		827
2016	190	175	43	1,851	1,563	288	108	98	10
2017	81	22	61	592	73	519	32	8	24
2018	335	287	94	7,570	6,730	840	1,348	1,251	98
2019	359	307	102	7,342	6,465	877	1,104	1,006	97
2020	393	345	119	6,888	5,652	1,236	1,169	1,067	102
2021	385	336	129	7,539	6,414	1,125	1,155	1,051	104
2022	385	339	115	6,345	5,025	1,320	959	882	77
2023	407	365	142	8,296	6,884	1,412	1,561	1,451	110
2024	390	353	127	6,893	5,539	1,354	1,291	1,214	76
2025	418	337	206	6,039	5,019	1,020	720	679	42
합 계	4,778	(`14~`15제외†)		71,954	(`14~`15제외)		11,035	(`14~`15제외)	
		2,866	1,138		49,364	9,991		8,708	740

주: : '25. 12. 31. 지급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14~'15년 신체/정신 통계 분리가 되지 않아, 합계에 산입하지 않음

[참고자료 3]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개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목적

○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질병·부상,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 지원금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 지원기간

○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

❑ 지원대상

○ 승선구조자, 승선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치료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

○ **(간병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된 비용

○ **(보조장구 구입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하여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된 비용

❑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 **(지급)**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 향후 국고 정산

❑ 지원금액(청구건수)

○ '22년 882백만원(5,025건), '23년 1,451백만원(6,884건), '24년 1,214백만원(5,539건), '25년 679백만원(5,019건)

[참고자료 4] 세월호 피해자 등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지원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지원금 등) 제1항,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 사업개요

○ **(내용)**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마음건강센터)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검사 수행

-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구조자,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의료기관	①진료비 청구 ⇄ ②지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③진료비 정산청구 ⇄ ④교부	보건복지부

○ **(지원기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

❑ 지원금액(청구건수)

○ ’22년 77백만원(1,320건), ’23년 110백만원(1,412건), ’24년 76백만원(1,354건), ’25년 42백만원(1,020건)